

2004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 방사선협력협정 모델 분석

# Analysis on the Model Cooperation Agreement for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이한명, 양맹호, 이병욱,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 요약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 이외에 개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이전되는 물자, 기술 등이 핵확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협력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협력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은 양국간 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모델 협정 개발을 위하여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원칙과 조항별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 Abstract

As the domestic nuclear technologies are matured, the necessities for the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are gradually increasing, in addition to those for developed countries. The existing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concluded by Korea contain various conditions in the use of the transferred 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ies for nuclear power plant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As such conditions could be an obstacle to a bilateral cooperation, some of them are better to be omitted for the cooperation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In this article, the basic principles and articles for the model agreement for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has been analyzed.

## 1. 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요소

원자력협력협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협정의 적용 대상, 공급국의 권리, 수령국의 의무 및 협력의 조건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1]

### 가. 협정의 적용 대상

협정의 적용대상은 종류와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협정에 규정되는 공급국의 통제권은 모든 물질, 장비, 기술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특정 물질, 장비, 기술 등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대상의 종류는 크게 핵물질(nuclear material), 물질(material), 장비(equipment) 및 기술(technology)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핵물질은 직접적으로 핵무기에 사용되거나 또는 핵무기에 사용되는 물질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일 민감하게 취급되어 온 품목이다. 핵물질은 선원물질(source material)과 특수핵분열성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로 구분된다. IAEA 헌장 제20조에서는 천연우라늄, 열화우라늄 (depleted uranium), 토륨 등을 선원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플루토늄-239, 우라늄-233, 동위원소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질은 핵물질이 아닌 것 중 핵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 중수 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NSG 지침의 Part 1 통제품목의 비핵물질, 장비 및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기술을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핵확산과 관련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제조하거나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국가간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협정의 통제권은 이전된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파생된 품목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파생된 품목에까지 협정의 통제권을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협정의 통제권을 강화하게 된다. 즉, 파생된 품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 협정의 통제권 수준이 결정된다.

### 나. 공급국의 권리

공급국의 권리는 사전동의권과 반환청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동의권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수령국이 특정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공급국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는 공급국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수령국이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령국 정부의 핵비확산 의지 또는 국내 기관의 활동에 대한 통제 능력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으므로 공급국 정부가 대신 통제 능력을 확보한다는 논리이다. 사전동의의 대상은 제3국 이전, 재처리, 농축 등 핵확산과 연

계될 수 있는 활동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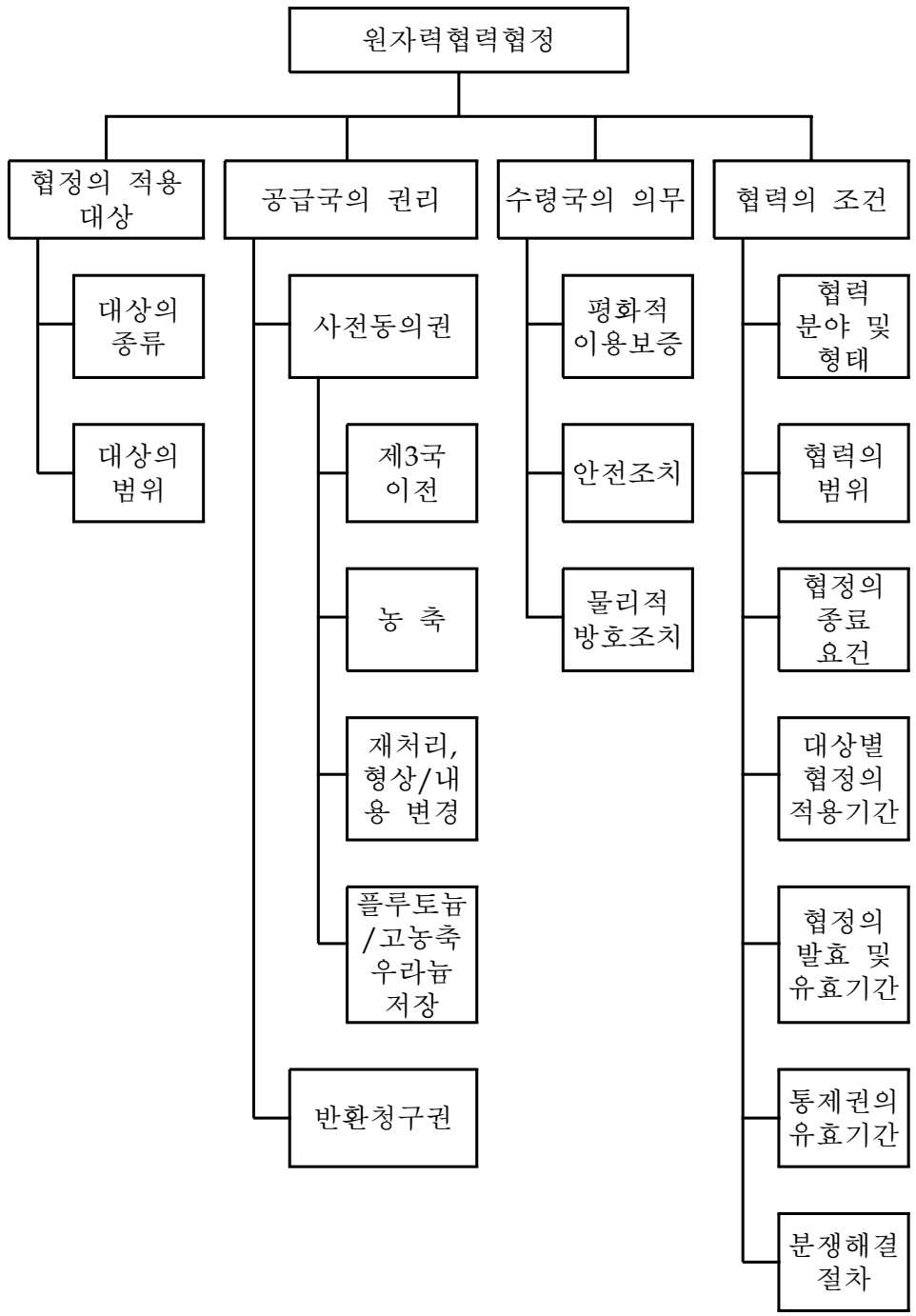


그림 1 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 요소

반환청구권은 이미 이전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품목에 대해 공급국이 수령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환청구권은 협정의 종료, 수령국의 의무 위반 등으로 공급국의 통제권이 행사될 수 없게 될 경우, 핵확산에 연계될 수 있는 품목을 반환 받아, 원천적으로 군사적 목적에의 전용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 다. 수령국의 의무

수령국의 의무는 크게 평화적 이용보증, 안전조치 적용, 물리적 방호조치 적용을 들 수 있다. 평화적 이용 보증이란 수령국 정부가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품목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폭발장치 및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급국 정부에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조치 적용은 평화적 이용의 검증을 위하여 이전된 품목 및 이로부터 파생된 품목에 대하여 수령국이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리적 방호 적용은 이전된 품목 및 이로부터 파생된 품목에 대하여 수령국이 물리적 방호조치를 적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방호란 핵물질의 불법적인 도난·분실과 원자력 시설의 파괴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총체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라. 협력의 조건

협력의 조건은 협력분야 및 형태, 협력의 범위, 협력의 발효 및 종료조건, 통제권의 유효기간,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한 것이다. 협정에서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분야 및 형태를 미리 규정하는 것은 핵확산과 관련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한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일반적 또는 개괄적으로 협력 분야 또는 형태를 규정하게 되면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양국 협력 주체간의 협력을 통제할 근거가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각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협력 주체들간에 양국의 법령 체제에 준하는 협력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통제권의 유효기간은 수령국이 공급국의 통제권을 피하기 위해 협정을 종료시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전조치 적용, 사전동의권, 물리적 방호조치 등에 적용된다.

## 2. 표준 방사선 협력협정 문안

### 가. 방사선 협력협정의 작성 배경

우리나라는 1956년 미국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원자력의 에너지 이용을 협력의 중심 분야로 두고 세계 각국과 유사한 방식의 원자력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왔다 (표 1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체결한 협력협정은 핵물질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와 같은 조건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향후 우리나라가 원자력협력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원자력발전분야에 늦게 진입하였거나 이 분야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국가들은 물론, 아직 원자력발전이나 원자력의 에너지 이용에는 거의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나라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원자력발전이나 에너지 이용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자력 협력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미 마련해 둔 한국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안을 상대국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의 에너지 이용분야에는 관심이 없거나 이를 추진할 여력이 없어, 원자력기술 중 오직 방사선이나 방사성동위원소 기술, 즉 비에너지분야의 기술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국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안의 내용이 수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핵물질을 이용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이용할 의지가 없는 국가에 대하여 안전조치 적용이나 물리적 방호 실시와 같은 조항의 적용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해되거나, 설령 장래 에너지 분야의 이용 가능성을 미약하나마 인정하더라도, 협정문의 내용을 수용하여 양국간 협력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 에너지 분야 기술만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협력관계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협력협정 문안이 필요하게 된다. 즉 방사선 협력협정은 아직 우리나라 정부와 공식적인 원자력 협력관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원자력의 에너지 이용보다는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에 주력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원자력분야의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상되었다.

표 1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현황

기간	협정체결국가 및 서명연도	비고
1950년대	미국 (1956)	미국과의 협정은 1972년 및 1974년 개정
1960년대	-	
1970년대	스페인 (1975), 캐나다 (1976), 호주 (1979)	
1980년대	벨기에 (1981), 프랑스 (1981), 독일 (1986)	
1990년대	일본 (1990), 영국 (1991), 중국 (1994), 아르헨티나 (1996), 베트남 (1996), 터키 (1998), 러시아 (1999)	일본과는 협력각서 교환
2000년대	브라질 (2001), 체코 (2001), 우크라이나 (2001), 이집트 (2001), 칠레 (2002)	

나. 방사선협력협정의 작성시 주요 고려 요소

방사선협력협정의 작성에 있어 기존의 원자력협력 표준협정안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협력협정 작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요소는 핵물질이다. 기존의 협정은 핵물질의 양국간 이전을 중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핵물질은 선원 물질과 특수핵물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원물질의 예로는 우라늄, 토륨 등을 들 수 있으며, 특수핵물질의 예로는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협력협정에서는 이러한 핵물질의 양국간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며, 핵물질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자력협력 표준협정안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둘째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핵물질의 거래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이다. IAEA의 안전조치 자체가 핵물질의 불법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러한 핵물질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협력관계에서는 안

전조치에 대한 조항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기본 철학이 핵물질을 이용한 핵무기의 제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전조치의 기본정신은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역시 핵물질의 이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방호의 실시이다. 물리적 방호 역시 핵물질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핵물질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협력관계에서는 물리적 방호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핵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언급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방사선협력협정을 체결할 상대 국가가 물리적 방호협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언급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넷째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핵물질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사전동의권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즉 이전된 핵물질을 이용하여 농축, 재처리 등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핵물질을 공급한 국가의 사전동의권이 필요하나, 핵물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핵물질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나,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요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이다.

#### 다. 한국 표준 원자력협력협정안과의 비교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안 (이하 원자력협정안)과 방사선협력 협정안 (방사선협정안)의 구성을 공통항목과 세분화된 항목, 그리고 생략된 항목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 협정에서 공히 다루는 조항은 전문, 용어정의, 재이전, 핵폭발 및 군사적 이용, 분쟁해결, 발효 및 개정에 대한 조항들이다. 두번째로, 세분화된 항목은 원자력협정안에서 협력의 분야 및 형태, 협력의 성격 및 범위로 규정한 2개 조항이다. 이들 조항은 방사선협력협정에서는 전자는 협력분야, 원자로 및 핵물질분야 협력, 협력형태로 세분화되었고, 후자는 협력주무기관, 보조약정, 정보의 유포로 세분화되었다. 세 번째로, 방사선 협력협정하에서 생략된 항목은 재처리 및 농축, 실시약정의 체결,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전, 대상별 협정의 적용기간, 협력의 종료, 공급국의 다중통제 조정, 부속서에 관한 조항 및 부속서가 생략되었다 (표 2 참조). 각 조항별로 양 협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안과 방사선협력협정안의 구성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안		방사선 협력 협정안	
조 항	내 용	조 항	내 용
전 문		전 문	
제 1 조	용어 정의	제 1 조	용어 정의
제 2 조	협력의 분야 및 형태	제 2 조	협력분야
		제 3 조	원자로 및 핵물질 분야 협력
		제 4 조	협력형태
제 3 조	협력의 성격 및 범위	제 5 조	협력 주무기관
		제 6 조	보조약정
		제 7 조	정보의 유포
제 4 조	재이전	제 8 조	재이전
제 5 조	재처리 및 농축		
제 6 조	실시약정의 체결		
제 7 조	핵폭발 및 군사적 이용	제 9 조	핵폭발 및 군사적 이용
제 8 조	안전조치		
제 9 조	물리적 방호		
제 10 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전		
제 11 조	대상별 협정의 적용기간		
제 12 조	협력의 종료		
제 13 조	분쟁 해결	제 10 조	분쟁해결
제 14 조	공급국의 다중통제 조정		
제 15 조	부속서		
제 16 조	발효 및 개정	제 11 조	발효 및 개정
부속서A	장비 및 물질 해당 품목		
부속서B	IAEA 현장의 핵물질 정의		
부속서C	물리적 방호조치 수준		

1) 전문 및 용어 정의

전문의 구성은 방사선협력협정에는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다루는 내용에 추가하여 '양자가 물리적 방호조치를 시행함을 상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은 상대국이 물리적방호협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수록할 것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방사선협력 협정하에서는 핵물질의 교환이 협력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는 물리적 방호조치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양국이 공히 물리적방호협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전문에 이를 언급함으로써 핵물질의 안전관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협력협정하에서는 핵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핵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나, 그 외 장비나 물질 또는 기술에 대한 정의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방사성협력협정에서는 협력의 주요 대상이 될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용 동위원소의 생산과 같은 행위는 군사적 목적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3]

## 2) 협력분야 및 협력분야 확대시의 조치

협력분야는 원자력협정과 방사선협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며, 결과적으로 방사선협정하에서는 협력분야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판단기준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핵물질의 이전 여부와, 원자로의 설계·제작을 위한 협력을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원자력협정에서는 원자력분야의 가능한 협력범위를 모두 망라하고 있으나, 방사선협정은 다루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사선협정에서는 핵물질의 이전이나 원자로분야의 협력 등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를 통하여 양국의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암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협정과 방사선협정의 협력형태, 즉 협력수단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점은 전자는 핵물질이나 장비를 교류할 수 있는 점에 반하여, 후자는 이를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전으로 대체한 점이라 할 것이다.

## 3) 협력 주무기관, 보조약정 및 정보의 유포

원자력협정에서는 단일 조항하에 협력의 범위 및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협정에서는 4가지 내용 즉 첫째 평등 및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협정 및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협력, 둘째 당사국 정부가 승인한 주체간의 정보, 핵물질, 장비, 기술의 이전, 셋째 교환된 정보의 사용 제약, 넷째 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기술하고 있다.

방사선협정에서는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협력 이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강조하고,

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간 보조약정 체결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보사용의 제약은 정보의 유포를 필요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사선협정에서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사안별로 보조약정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4) 재이전, 사전동의 및 군사적 이용 등

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하여 제3국으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정은 방사선협정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력협정과 차이점이라면 방사선협정에서는 재이전 제한 품목중 핵물질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핵무기제조나 기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방사선협정에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자력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조항중에서 농축 및 재처리, 실시약정,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안전 및 환경보전,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방사선협정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축 및 재처리는 방사선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항 및 사전동의권의 이행을 위한 실시약정의 체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는 그 성격상 핵물질을 대상으로 하므로 방사선협정에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협정의 적용기간은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이 언제까지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사선협정에서는 굳이 언급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협정의 종료 조건에 관한 조건은 재처리 의무위반,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군사적 목적 사용금지 의무 위반을 제외하고는 방사선협정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군사적 목적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의 협력의 종료조건을 명시하는 것조차도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 분쟁해결 및 협정의 발효 등

분쟁해결 및 협정의 발효에 대한 조항은 원자력협정과 방사선협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방사선협정에서는 협정의 종료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방사선협정의 최초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협정 종료 이후의 의무준수 범위는 보조약정으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공급국의 다중통제 역시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해서 적용할 사항이므로 방사선협정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3. 결론 및 건의사항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 이외에 개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은 이전된 핵물질과 기술 등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위주의 협력 확대 노력에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협력 조항들은 수정하여 새로운 협력문안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의 원자력 기술의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방사선 및 동위원소 분야를 위주로 한 협력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협정문의 작성을 위해서는, 첫째 핵물질의 이전을 대상범위에서 제외하고, 둘째 핵물질의 거래에 따라 부수되는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배제하며, 셋째 물리적방호는 전문에서만 최소한으로 다루며, 넷째 사전동의권에 대한 조항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선 협력협정 본문에서는 재처리 및 농축, 실시약정의 체결,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전, 대상별 협정의 적용기간, 협력의 종료, 공급국의 다중통제 조정, 부속서에 관한 조항 등이 생략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이들의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IAEA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물질방호협약의 개정추이를 주시하고, 협약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결과를 협정문안에 새로이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한국 원자력 협력 표준협정 모델 개발, KAERI/RR-1689/96, 과학기술처, 1997
2. 과학기술처, 원자력조약집, 1993
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Cooperation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Jakarta, 11 November 1997

### 후기

본 원고는 과학기술부 원자력 정책연구사업으로 수행한 "방사선협력협정 모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